

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김 인 제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 · 동료 의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송과 제4선거구 출신 이 태 성 의원 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,

- 빛공해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증대됨에 따라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시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, 공공기관의 야간 조명 운영시간 및 조도를 제한하는 한편, 빛 방사허용 기준을 조례상에 명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.

□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공공청사의 장이 「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(가로등, 보안등 및 공원등, 장식조명)설치·관리 권고기준」에 따라 “주거지 사이의 거리” 및 “지역특성” 등을 고려하여 빛공

해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.

□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!

- 본 개정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안하였다는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